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5.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13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6. 5.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최 두 열

가. 제안이유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개정 골자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감면 규정 삭제(안 제8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가 별도 합산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제1항, 제2항)
 -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 개정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 정비(안 제10조 제2항)
 - 2005. 1. 5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

으로 분리됨에 따라 “토지 및 지상정착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개정함

-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2항)
-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강연 조문 정비(안 제17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분 재산세 강연조항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5. 5. 20과 2006. 2. 2 각각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이첩·통보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현행조례 제8조의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가 별도합산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경감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의 제명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고, 안 제1조 내지 안 제24조에서는 동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감면 규정 삭제(안 제8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가 별도 합산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나.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제1항, 제2항)
-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 개정
- 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 정비(안 제10조 제2항)
- 2005. 1. 5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토지 및 지상정착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개정함
- 라.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2항)

마.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문 정비(안 제17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분 재산세 감면조항 중 “화물 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조문 정비

3. 개정근거

가.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

나.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6. 3. 2 ~ 2006. 3. 22)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4. 10)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조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4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 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3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4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제5조 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2호중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으로, 6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7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 육성법」”으로 하며, 제6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제7조 제1항1호와 3호 및 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 보호법」”으로, 제8조의2 및 8조의3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제8조의3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10조제1항과 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제11조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제12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13조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14조중 “재래시장

육성을위한특별법”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15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16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17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제18조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제19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제20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제21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제23조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을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24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8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삭제></p>
<p>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본문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3.(생략)</p> <p>②(본문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3. (생략)</p>	<p>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본문 현행과 같음).....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1.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3.(현행과 같음)</p> <p>② (본문현행과 같음)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1.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u>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u>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u>토지·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및 주택</u></p>
<p>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 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2(생략)</p>	<p>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①..... 1~2(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u>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제 시행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7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화물터미널 및 창고용</u>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7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u>창고용</u>..... </p>